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2
----------	-----

발의연월일 : 2025년 5월 16일

발의자 : 강수진,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정병기

1. 제안이유

성북구 내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되어 통보되었거나 피해가 확정된 아동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를 실질적으로 감면·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7조(사용료 등) 제2항에 따른 [별표3]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 제5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감면율 100분의 100)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 : 2025. 5. 20. ~ 2025. 5. 26.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사용료가 감면되는 시설 및 감면율(제27조 관련)

구 분	감 면 대 상	감 면 율
육아종합 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1.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 또는 성북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직계가족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5.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피해의심 통보아동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100분의 50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8.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9.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0. 어린이집에서 센터시설 사용시	

※ 단, 중복할인은 불가함.